

◎ **금융위원회 공고 제2021-264호**

「금융투자업규정」을 개정함에 앞서,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7월 26일  
금융위원회

**「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」 규정변경예고**

**1. 개정이유**

과생결합증권의 발행이 증가함에 따라 증권사, 금융시장, 투자자에 미치는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과생결합증권 발행인의 유동성비율 규제를 신설하고, 외화유동자산보유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의 근거조항을 마련하며, 「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(‘21.2.1일)」 및 「자본시장부문 규제입증책임제」 후속조치로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

**2. 주요내용**

가. 과생상품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유동성비율 (안 제2-24조제1항제4호 라목, 제3-41조의2)

과생결합증권을 발행하여 미상환 잔고를 보유한 금융투자회사에 유동성비율(1·3개월) 100% 이상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외화유동 자산 보유 등과 관련된 내부통제기준의 근거조항 마련

나. 초기 중견기업 대출·투자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 완화 (안 제 3-14조)  
「조세특례제한법」상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·투자를 영업용순자본

차감항목에서 제외하여, 증권사의 건전성 규제 부담을 완화

다. 증권사 겸영업무에 벤처대출을 포함 (안 제4-1조)

증권 및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영위하거나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에 해당하는 경우,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업무를 겸영업무로 허용

라. 주식배당 신주도 신용공여시 담보증권으로 인정 (안 제4-27조)

권리발생이 확정되었으나 입고되지 않은 주식배당 신주도 담보증권으로 인정

마. 담보물 임의상환 방식 관련 소비자 선택권 확대 (안 제4-28조)

현재 담보물 처분을 통한 채무변제 순서를 일률적으로 규정하나, 투자자 요청에 따라 이자와 원금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

바. 기업금융 자산 관련 조문 정비 (안 제4-102조의6)

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발행어음 등을 통해 조달한 자금과 관련하여 기업금융 관련 자산 범위에서 SPC 및 금융회사를 제외하여 모험자본 공급을 유도

사. 인가·등록업자에 대한 인가증·확인증 발급 (안 제2-2조제3항)

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인가증 또는 등록증을 발급토록 함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(참조 : 자본시장과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보내실 곳 : 금융위원회(자본시장과)
  - 주소 : (03171)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
  - 전화 : 02-2100-2644
  - 팩스 : 02-2100-2648
  - 이메일 : yongjinshin@korea.kr

※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([www.fsc.go.kr](http://www.fsc.go.kr) / 지식마당 / 법령정보 / 입법예고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